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증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95. 3. 2.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5.2.18. 마포구
청장

나. 회부일자 : '95. 2. 18.

다. 상정일자 : 제27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5.3.2)상정, 질의토론, 의결

2. 제안설명자 요지

(제안설명자 : 유병식 지역교통과장)

가. 제안이유

주차장법령과 서울특별시의 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시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세입세출에 관한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특별회계 세입 재원 확대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함)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이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함.(안 제3조 제1호, 제2호)

-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이 설치하여 관리하거나, 법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함.(안 제3조

제3호, 제4호)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견인료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함.(안 제3조 제5호)

(2) 특별회계 세출대상의 효율적인 조정으로 그범위 확대(안 제4조)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정의 적립

-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연구·시설에 관한 비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법인 또는 개인에게 관리 위탁한 경우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그리고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등이 확대 규정되었고,

○ 세출대상으로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비용과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정립적금, 그리고 지구교통 개선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에 관한 비용등이 추가규정 되었음.

○ 동 개정조례안중 안 제3조제9호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재원 규정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제1호에는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에 한해서만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은 세입재원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사료되나,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4조 제7호 규정과 '95.1.3일자 서울시 준칙안에 의하여 본 조례안에 규정된 것은 자치구 세원확보 차원에서는 필요한 규정이라고 여겨지나, 본위원회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주차장의 제22조의 규정에 보면 특별회계세입재원이 되는 주차요금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이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 제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세출은 주차장법 제22조의 규정에 적정한 내용인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전병만위원) : 제4조제7호의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연구·시설에 관한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 답변요지(유병식 지역교통과장) : 전에는 서울시 세입에서 보조금을 받아 하던 것을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하는등 세입을 다원화하여 자치구 세입이 많이 늘어나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차장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하여 쓸수 있으므로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차량의 교통에 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주차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조사·연구 하려는 것이므로 연관이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2	제출일자 : 1995. 2. 1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	-----	---

1. 개정이유

주차장법령과 서울특별시의 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시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세입·세출에 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특별회계 세입 재원 확대

-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고만 함)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이 설치하여 직접관리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함(안 제3조 제1호, 제2호)
- (2)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이 설치하여 관리하거나,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함(안 제3조 제3호, 제4호)
- (3)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견인료를 특별회계재원으로함(안, 제3조 제5호)

나. 특별회계 세출대상의 효율적인 조정

로 그 범위 확대(안제4조)

- (1)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건이 등에 관하조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 (2)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정의 적립
- (3)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연구·시설에 관한 비용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12.20. 법률제4789호)제15조, 제117조제2항.
- 지방재정법(1991.12.31. 법률제4466호)제5조
- 주차장법(1991.12.14. 법률제4437호)제21조의2.
- 주차장법시행령(1992.6.30 대통령령제13672호)제14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 운영에관하여”를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의 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 운영에관하여”로 한다.

제3조본문중 “각호에세입”을 “각호의1의수입”으로 하고 동조중 제1호를 삭제하며 제2호내지 제4호를 제6호내지 제8호로하고 제5호중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납부금”을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으로하여 제9호로 하고 제6호내지 제9호를 제10호 내지 제13호로

하며 동조에 제1호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3.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5.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건인등에관한조례제4조 규정에 의한 견인료
- 제4조본문중 “각호의용도”를 “각호의1의용도”로하고 동조에 제5호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건인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지구교통개선사업의조사·연구·시설에 관한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규정에 의한 <u>주차장 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마포구”라한다)의 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 운영에관하여</u>.....</p>
<p>제3조(세입)세입은 다음 각호에 <u>세입</u>으로 한다.</p>	<p>제3조(세입)세입은 <u>다음각호의1의 수입</u>으로 한다.</p>
<p><u>신설</u></p>	<p>1. 법제8조제1항규정에의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의주차요금</u></p>
<p><u>신설</u></p>	<p>2. 법제8조제1항규정에의하여 <u>구청장이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u></p>
<p><u>신설</u></p>	<p>3. 법제12조제1항규정에 의하여 <u>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주차요금</u></p>
<p><u>신설</u></p>	<p>4. 법제13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u>구청장이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u></p>
<p><u>신설</u></p>	<p>5. <u>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의한견인료</u></p>
<p><u>신설</u></p>	<p>(삭제)</p>
<p>1. 법제12조제1항규정에의한 <u>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u></p>	<p>6.~8(현행2.~4와 같음)</p>
<p>2.~4(생략)</p>	<p>9. <u>노외 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u></p>
<p>5. 법제19조제5항의 규정에의한 <u>부설주차장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u></p>	<p>10.~13(현행6.~9와 같음)</p>
<p>6.~9(생략)</p>	<p>제4조(세출)회계의 세출은 <u>다음각호의1의 용도</u>의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제4조(세출)회계의 세출은 <u>다음각호의 용도</u>의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1.~4(현행과 같음)</p>
<p>1.~4(생략)</p>	<p>5. <u>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 비용</u></p>
<p>(신설)</p>	<p>6. <u>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u></p>
<p>(신설)</p>	<p>7. <u>지구교통개선사업의조사·연구·시설에 관한비용</u></p>
<p>(신설)</p>	
<p>(신설)</p>	